

정보공개서

F.S 로지스틱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9010004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9.01.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19.07.19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16 통일빌딩 6층 F.S 로지스틱 가맹사업부 Tel 032-503-0981 Fax 032-503-0981 http://www.f-seasons.co.kr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0000 11 01	F.S로지스틱		
2009.11.01	사업자등록번호 122-20-37746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F.S 로지스틱	포시즌마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17-16 통일빌딩 6층
가맹본부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이무성	032-503-0981	032-503-0981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포시즌마트	편의점



상 호	포시즌마트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포시즌마트	서비스표 등록번호: - 자세한 내용은 ㅣ-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영업표지	Four seasons Mart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년	179,191	47,334	131,856	539,753	37,589	37,589
2017년	114,469	15,124	99,345	458,552	28,688	28,688
2018년	69,654	33,928	35,726	427,661	25,950	25,950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는 가맹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무성	2009.11~현재	F.S 로지스틱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18년 12월 31일	1	_	_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포시즌마트	가맹점 상호로 사용		해딩	없음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포시즌마트]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2006 년 11 월 20 일

*2009 년 11 월 "F.S 로지스틱"(대표 이무성) 설립 전 "삼성 F.S" (대표 최만권)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입니다.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삼성F.S	포시즌마트	최만권	2007.05~2009.11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 대덕테크노타운 411
F.S로지스틱	포시즌마트	이무성	2009.11~현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17-16 통일빌딩 6층

3. [포시즌마트] 업종

영업표지	업종				
ᄑᄭᅐᇚ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포시즌마트	편의점	편의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포시즌마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ICE	2016.12.31			2017.12.31			2018.12.31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90	90	_	96	96	_	99	99	_
서울	19	19	_	19	19	_	19	19	_
부산	2	2	_	2	2	ı	2	2	_
대구	3	3	_	3	3	1	3	3	_
인천	12	12	_	12	12	_	12	12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4	4	_	5	5	ı	5	5	_
울산	1	1	_	1	1	_	1	1	_
세종	_	_	_	_	-	-	ı	_	_
경기	28	28	_	31	31	_	32	32	_
강원	2	2	_	2	2	-	2	2	_
충북	5	5	_	6	6	_	8	8	_
충남	3	3	_	4	4	_	4	4	_
전북	4	4	_	4	4	_	4	4	_
전남	4	4	_	4	4	_	4	4	_
경북	1	1	_	1	1	_	1	1	_
경남	2	2	_	2	2	_	2	2	_
제주	_	_		_	_	-	_	_	_

5. 바로 전 3년간 [포시즌마트]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16년	85	5	-	-	-	90
2017년	90	6	_	_	_	96
2018년	96	3	_	_	-	95

6. [포시즌마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포시즌마트]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에게 POS 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고, [포시즌마트]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류 역시 불규칙(사입률이 높음)하여 일반적인 방법(POS 데이터에 의한 방법,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내역으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어 2017 년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재하지않았습니다. 차후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면, 정보공개서를 즉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8.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9.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18년]에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그ㅂ	수단 기간		지출 비용			ul ¬
구분	구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광고			67,605			

10.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에 따라 귀하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연락처	마케팅부 02-3671-7332
피보험인(보험계약자)	F.S 로지스틱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 또는 가맹점 영업개시일
포함기신 	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포함하기 구성열시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 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포시즌마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330 만원	체결 시 (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가입비(가맹비의 10%) -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 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60%) -개점 전 서비스 교육(가맹비의 30%)

*반환조건: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2) 보증금액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7 8	금액(VAT포함)		
구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가맹비	330만원	165만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66 ㎡기준 (약 20 평)	면적 3.3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_	5,390	해당없음	_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3,740	187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_
초도물품	별첨1_1 거래상대방	1,650	해당없음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_
별도금액	참고		실, 냉난방기, 소 증설, 가스증설, 7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최소 점포 기준 66 ㎡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시 드랜드위에 기법이 단단	[기에게 기이립되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트버린 기조 레이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Ⅶ-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W-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기일의 다음날 지급하는 날 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 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 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18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가능한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될경우 해당)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포시즌마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포시즌마트"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의 [포시즌마트] 가맹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을 생략 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포시즌마트] 가맹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을 생략 합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 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2018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2) 당사는 2018 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

- ① 귀하는 개점 전 당사와 협의한 상품 외에 브랜드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귀하와 개점 전 협의한 상품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기존 상품의 변경 또는 추가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 제공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품을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포시즌마트]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설인 답증 됩用	가맹본부	계열회사	
편의점/슈퍼마켓	포시즌마트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M (다만, 특수상권은 텃밭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라 함은 강남역/홍대/명동 등에 준하는 대형상권,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포시즌마트]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경우	180일~90일 사이 통보)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계약기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간 만료 전 60일 이내 동의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여부 회신)→ 영업지역 변경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 (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6. 계약기간.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포시즌마트]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귀하의 시설투자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해당사항 없음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① 인/허가 취득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④ 메뉴판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⑧ 광고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상품공급의 중단 ⑪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⑫ 관계법령의 준수 ⑬고객 컴플레인 관련
-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제8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제9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6. 제14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7. 제18조제2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8.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9.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재료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귀하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나.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다.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⑥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①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



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 한 경우는 제외

- ⑧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⑨ 귀하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 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⑩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5-1) 가맹계약의 기간 에 따른 기간	편의점/슈퍼마켓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포시즌마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자율 (당사는 점별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점주 재량껏 상권과 지역 유동인구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시되,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개,폐점시간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1 명 이상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서비스의 표준화)	취급 상품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포시즌마트]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및 판촉활동	100%	_
브랜드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100%	_
가맹점모집광고	100%	_
가맹점사업자 개별 광고 및 판촉활동	-	100%

* 불가피하게 귀하의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당사는 광고 및 판촉의 시기/종류/비용분담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시행 30일 전 통지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9.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 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 13 조 1 항 및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반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10 만원)의 지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 자에게 제



14 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12 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미만 시 2개월분, 1년이상 ~2년미만 시 4개월분, 2년이상 시 6개월분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 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매출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본사 공급마진에 해당되는 금액-만약 당사로부터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위약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3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⑧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_	36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 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14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수령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 -가맹계약체결	1일	바랍니다.
공사 착수	공사 실시	15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집기 등 입고 간판설치	2일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등 입고 상품 등 입고		2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교육실시 및 오픈지원 (7일)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 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 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 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포의 인위 보조를 보고 이 시설 등 하는 보고 이 시설 이 보고 되었다. 보고 이 시설 이 있는 이 사이의 유럽적 지 경이 유럽적 이 유럽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오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법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 망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부터	점로부터 3 면 이내의 사이 의로 로이내는 지나이의 사이의 보는 이내에 하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시는 기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 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 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 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 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 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포시즌마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상품 판매방법 및 개점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귀하의 점포)	7일 총63시간 (점주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 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 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선택 교육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신상품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주변환경에 동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신상품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받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

가맹영업팀(02-580-266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02-2023-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holikaholika.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 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본사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변	<u> </u> 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아래 빈칸에		<mark>3개서/인근</mark> 습니다."리			서/가맹계약서를 ² .
수령확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	·자치단체>
-------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가맹본부 F.S로지스틱 (인)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점주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l서/인근 가맹점 니 다 ."라고 작성	현황 문서/가맹계약서를 해주세요.
수령확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	방자치	단체>
------	-----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가맹본부 F.S로지스틱 (인)